

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7월 21일
 발 의 자 : 조 재 구 의원
 (외 찬성의원 6명)

1. 주 문

가. 대구국제공항을 지역의 관문거점 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K-2 군공항과 함께 통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**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**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대구국제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계획이 중앙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방침으로 무산됨에 따라, 대구국제공항은 대구·경북지역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문거점공항으로 육성·발전시키는 등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.

○ 한편, 대구국제공항과 같은 부지에 위치한 K-2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, 대구시는 대구도심 북동부 지역의 주민불편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공항과 공군기지의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, 지난 2013년 ‘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(이하 ‘군공항이전 특별법’)을 근거로 본격적인 이전절차를 시행중이었으나, 영남권 신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대구국제 공항의 준치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.

○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K-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하나의 전략 속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, 지역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입지의 선정, 이전 및 공항건설재원 확보 등 중대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지혜의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.

○ 따라서, 우리 7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대구시와 대구·경북지역 정치권, 주요 시민단체 등 각계·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, 대구국제공항과 K-2 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, 대구국제공항이 지역의 관문거점공항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**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 위원회**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
 - 활동기간 : 2016. 7. 26 ~ 2018. 6. 30 (약 23개월)
 - 위 원 수 : 7명 이내
- 관련법규 붙임

관 련 법 규

[지방자치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[같은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
-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]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
-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-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
 - 1. 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
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 - 라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- 2. 기획행정위원회
(이하생략)

제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삭제
- ③ 삭제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-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,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

-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

-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